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조제2호나목”을 “제2조제2호나목과 다목”으로, “새로 추가된 업종”을 “새로 추가된 업종 또는 제품·서비스와 새로 도입된 제공방식”으로, “상시 근로자 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상시 근로자 수가”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신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분야”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제3조 중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거나 기존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추가 또는 제공방식이 도입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위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중소기업 및 산업 관련 정책, 구조 전환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산업관련 정책, 구조전환 관련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소기업 단체나 기관에서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구조 전환, 신사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의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⑪ 심의위원회 위원은 같은 조 제10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같은 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제1항제3호 중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할 것”을 “하거나,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사업 분야”에 해당할 것”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과 다목의 사업비중은 공동사업전환계획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2.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대표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3.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기업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에 유기적 연관성이 있을 것

5.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②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대표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사업전환심사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심사와 승인을 위하여 사업전환계획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승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타당성 등

③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를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전환계획”을 각각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을 “(사업전환계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업전환계획”을 각각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업종”을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전환계획”을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를 “(사업전환계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성과평가 및 관리) ①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1. 사업전환을 위한 목표 달성도
2. 전환사업의 사업실적 및 경영성과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인기업에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업전환계획”을 각각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을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사업전환계획”을 각각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사업전환계획”을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한다.

4.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① 「중 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 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 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 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 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 종에 종사하는 <u>상시 근로자 수</u>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 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u>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① ----- ----- ----- <u>제2조제2호나목과 다목-----</u> ----- <u>새</u> <u>로 추가된 업종 또는 제품·서 비스와 새로 도입된 제공방식-</u> ----- ----- ----- <u>상시 근로자 수가</u> ----- ----- ----- -----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2조의2 (신사업의 범위) 법 제2 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분야”란 법 제5 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사업전환심의위 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하 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u>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제3조(적용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종 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신 설>

----- 이루어지거나 기존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추가 또는 제공방식이 도입되는 것---.

제5조(사업 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위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중소기업 및 산업 관련 정책, 구조 전환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산업관련 정책, 구조전환 관련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소기업 단체나 기관에서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구조전환, 신사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의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⑪ 심의위원회 위원은 같은 조 제10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 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u>밝히는 경우</u>
	<u>6. 같은 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u>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u>	3. <u>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u> ----- ----- ----- ----- ----- -----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춘 사업전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전환계획을	② ----- ----- ----- ----- -----

우선 승인할 수 있다.

1.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할 것

2.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

1. -----

하거나,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사업 분야”에 해당할 것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과 다목의 사업비중은 공동사업전환계획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2.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대표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3.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제품

· 서비스 또는 제공방식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기업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에 유기적 연관성이 있을 것

5.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②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대표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서에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 설>

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사업전환심사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심사와 승인을 위하여 사업전환계획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승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타당성 등

③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실태
 3.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 ② (생략)

제12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2. -----
 3.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전환계획 ·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①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2.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생략)

<신설>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1. -----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

2.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전환계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 (성과평가 및 관리) ①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1. 사업전환을 위한 목표 달성

	<u>도</u> <u>2. 전환사업의 사업실적 및 경영성과</u> <u>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인기업에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 ----- ----- ----- -----.
1. <u>사업전환계획</u> 과 관련된 회계장부	1. <u>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u> ----- --
2. <u>사업전환계획</u> 이행과 관련된 서류	2. <u>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기업 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 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1. <u>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 획의 승인</u> 2. 법 제10조에 따른 <u>사업전환 계획</u>의 이행실적조사 3. 법 제11조에 따른 <u>사업전환 계획</u>의 변경승인 <u><신설></u> 4. 법 제31조에 따른 <u>사업전환 계획</u> 승인의 취소 5.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업무의 위탁) ----- ----- ----- -----. 1. <u>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 획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공 동사업전환계획</u>----- -- 2. ----- <u>사업전환 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u>-- ----- 3. ----- <u>사업전환 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u>-- ----- 4. <u>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인가 업에 대한 성과평가</u> 5. ----- <u>사업전환 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u> --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